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이방식* · 박석재**

-
- I. 서 론
 - II. 서류 심사 관련 유의점
 - III. 정의, 지정 및 서류 송부관련 유의점
 - I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새로운 신용장통일규칙¹⁾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규칙은 2006년 10월 25일에 ICC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은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²⁾ 거의 1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³⁾ UCP 600에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1)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이하 UCP 600이라 함).

관해서는 학계에서 주로 개정 경위, 특징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많은 연구⁴⁾가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UCP 600의 개정을 전후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는 진행될 수 없었다. UCP 600이 아직 시행 전이었거나 또는 시행 후 얼마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UCP 600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국제상업회의소 측에서도 UCP 600에 관한 주석서⁵⁾를 2007년 11월 하순에 간행하였으므로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UCP 600에 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최신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여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실무상 가장 관심이 많은 서류심사 관련된 내용과 정의, 지정 및 서류 송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관계자들이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91 대 O의 만장일치의 표결에 의하여 ICC 은행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 화환신용장에 관한 ICC의 개정된 규칙인 UCP 600을 승인하였다(Anonymous, "Banking commission approves revi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http://www.iccwbo.org/iccjcde/index.html>, 2006. 10. 25 Paris).

3) 高砂謙二, "信用狀統一規則改正とノンコルレス銀行の第二通知銀行問題(上) - 中小金融機關實務對應策お裁判事例から検討 -", 『國際金融』, 第1187號, 2008. 4. 1, p.52.

4) UCP 600의 개정 배경 및 경위, 구조상의 변화, 내용상의 변화에 관해서는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p.63~83을 참고하기 바란다.

5)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II. 서류 심사 관련 유의점

1. 서류심사기간

UCP 600 제14조 b항은 서류심사기간으로서 UCP 500 제13조 b항의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 및 제7은행영업일(Seven Banking Days)을 삭제하고, 새로이 최장 제5은행영업일(Maximum of Five Banking Days)을 도입하였다.

UCP 500에서 표현된 상당한 기간을 삭제한 것은 대부분의 은행이 상당한 기간을 제7은행영업일의 전부라고 해석하고 있음⁶⁾이 UCP 500의 개정 과정에서 분명하게 되어, 상당한 기간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정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ICC 37개 국내위원회 중 36개국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용어를 UCP 600의 본문에서 제거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류심사를 위한 최대 기간으로서 5일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것이 UCP 600에 반영된 것이다.⁷⁾

상당한 기간이란 자동적으로 제7은행영업일을 의미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제7일은 최대기간이며,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1일과 제7일 사이의 어느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고려될 수 있다.⁸⁾ 확실히 상당한 기간은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것이 정말로 상당한 기간인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의 상황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통례이며, 획일적·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개설은행에서도 서류 심사에서 서류 수리의 가부에 이르기까지 요하는 상당한 기간은 한창 바쁠 때와 휴가 중의 행원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⁹⁾

다음으로 은행영업일은 UCP 600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6) 飯田勝人, “動き出した信用狀統一規則の改訂作業と改訂の方向性”, 『金融法務事情』, No.1693, 2003. 12. 15, p.5.

7) ICC, The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 2005. 11의 comments to draft articles 참조.

8) Pradeep Taneja, “UCP 600 :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NSIGHT*, Vol.12, No.4, 2006. 10/12, p.3.

9) 飯田勝人, “UCP600の14條における若干の解釋上の問題點”, 『銀行法務21』, No.689, 2008. 6, p.21.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즉, 은행 휴일이 아니라 은행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지급, 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날이어야 한다. 따라서 극히 일부 은행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만 이는 소매금융 업무¹⁰⁾만을 수행할 뿐 신용장의 개설, 조건변경, 결제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영업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¹⁾

여기에서 새로운 서류심사기간인 제5은행영업일이 모든 경우에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는 1~2일의 심사기간이면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UCP 600이 서류심사기간을 “최장 제5은행영업일”로 규정하였더라도, 관할권과 준거법에 따라서는 합리성을 둘러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간단한 서류심사를 제5은행영업일을 보장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분쟁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¹²⁾

최장 제5은행영업일에 관해서는 서류심사의 기간으로서 ① 항상 제5은행영업일이 허용된다는 사고방식과, ② 최장이라는 표현을 고려한다면 어디까지나 제5은행영업일 중의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양자의 해석 중 ②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이후의 판례 등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¹³⁾

다만 해석상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실무대응으로서는 UCP 600 제1조에 “이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UCP 600 제14조 b항의 최장 5은행영업일에 대체하여 언제나 5은행영업일이 적용된다.”라는 취지의 문언을 신용장에 명기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⁴⁾

10) 예를 들어 예금업무나 외화 환전 업무만을 수행함.

11)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19.

12) 서정두, “UCP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112.

13) 飯田勝人, “UCP600의ICC코멘타리에關聯した銀行實務上の注意点”, 『銀行法務21』, No.684, 2008. 2, p.20.

14) 飯田勝人, 전계 주 9, p.22.

2. 서류상의 정보의 저촉

UCP 600 제14조 d항은 서류 상의 정보(data)의 저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순이 단순한 타이핑 예러와 문법상의 오류의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대부분 불일치를 지적하여 왔지만, 이러한 종류의 불일치의 지적은 인정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UCP 600의 기초 그룹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변경하여야 하며, UCP 500 제 13조 a항에서의 외견상 상호 모순한다고 보이는 서류(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라는 표현보다는, 서류에서 정보는 저촉하여서는(conflict with) 안된다라는 표현이 보다 협의이고 마음에 들며, 이러한 변경에 의하여 은행은 정보 자체의 일치만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UCP 600의 기초 그룹은 이와 같은 표현의 변경으로 불일치가 감소할 것으로 믿고 있다.

본 조항은 저촉하고 있지 않음이란 표현을 더욱 더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맥에서 읽혀진 경우에는(when read in context)이라는 표현을 부가하고 있다. 서류가 일치한 제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신용장조건, 서류자체의 구조·목적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을 평가하여 이해하고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저촉하고 있지 않는 예는 이하와 같다. 원산지증명서에서 수하인에 관한 정보이며, 선하증권에서 수하인에 관한 정보와는 다른 정보는 저촉하고 있다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금융을 위한 담보로서 물품의 담보권을 가지는 은행인 경우가 있으며,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는 것 없이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하인으로서 기재된 은행인 경우도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된 수하인은 세관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 선하증권에서 수하인은 권리증권의 기능에 관계하고 있다. 양 당사자는 어느 쪽도 수하인이라는 명칭이지만, 서류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에서 다른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된 신 표현의 해석 예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해석을 다른 사례에도 틀림없이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때문에 이후 더욱 시일을 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의 개설은행이 신용장 중의 문언에 의하여 UCP 600 제14조 d항을 제외하는 예도 보고되고

있음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¹⁵⁾

실제로 UCP 600에 기초하여 개설되고 있는 신용장에도 불구하고, UCP 600 제14조 d항을 적용하지 않고, UCP 500 제13조 a항을 적용하는 취지를 명기한 신용장이 간혹 보인다는 사실은 개설은행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14조 d항을 신규로 도입한 ICC 기초 그룹의 의도¹⁶⁾와는 달리 적어도 당분간은 역으로 불일치가 증가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¹⁷⁾

요컨대 동 조항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제시된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 서류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맥락 속에서 읽혀질 때 그 서류 자체의 다른 내용 또는 다른 요구된 서류 또는 신용장의 내용과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상충되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신용장과 서류는 물론이고 국제표준은행관행에도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¹⁸⁾

참고로 서류심사를 하다 보면 서류의 내용을 보고 하자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UCP 600에서 서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 서류는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뿐이다.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포장명세서에 상품명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상품명세를 표시하지 않아도 하자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⁹⁾

3. 서류의 기능 충족

UCP 600 제14조 f항은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밖에 제14조 (d)항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시된 대로 그 서류를 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UCP 500 제21조에

15) 飯田勝人, 전계 주 13, pp.20~21.

16) 본 조항의 의미는 서류심사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UCP 500의 서류심사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상당일치의 기준을 엄두에 두고 규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강호경·임목삼,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p.94).

17) 飯田勝人, 전계 주 9, p.23.

18) 서정두, 전계논문, p.114.

19)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101.

남아 있던 부분이며 여기서 추가된 부분은 제시된 서류가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 규정은 서류 심사 담당자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류에 나타나는 정보 내용이 동 서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²⁰⁾ 즉, 동 규정은 서류 제목 보다는 서류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신용장 거래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요구한 제목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류 내용은 요구된 서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²¹⁾

여기에서 서류의 기능은 상거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업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서류의 심사기준에서 문언상의 일치성만을 요건으로 하는 관행이 서류의 자료 내용에 의한 기능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²⁾ 예를 들어 중량명세서의 물품의 무게에 대한 개별적 또는 전체적 명세가 있어야 한다. 동 서류에 나타나는 무게에 대한 표시는 동 서류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³⁾

따라서 중량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지 않는 중량명세서는 그 서류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분석증명서가 분석에 관한 정보를 전혀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경우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분석증명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²⁴⁾

20)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게서, p.104.

21) 박세운·김영락·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p.113.

22) 한재필, “UCP 600에서의 서류심사표준에 관한 연구 : UCP 500의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p.114.

23)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게서, p.104.

24) 飯田勝人, 전게 주 13, p.21.

Ⅲ. 정의, 지정 및 서류 송부 관련 유의점

1. 정의상의 유의점

1) 일치하는 제시

UCP 600 제2조는 5번째로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를 정의²⁵⁾하고 있는데 이는 UCP 500에서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즉, UCP 500에서는 제시의 개념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류의 제시만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UCP 600에서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시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심사할 수 있는 서류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는지 등의 시간적인 사항, 어느 계좌에 요구하는 대금이 이행되었는지 등의 공간적인 사항,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형태의 제시를 포함하는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⁶⁾

UCP 600에서 일치하는 제시의 정의에는 아래의 세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류의 제시는 신용장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서류의 제시는 당해 신용장거래에 적용되는 UCP 600의 규정²⁷⁾을 충족하여야 한다. 셋째, 서류의 제시는 국제표준은행관행²⁸⁾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서류가 신용장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평상시 이용하는 실무를 포함한 것이며, 그 대부분이 ICC의 출판물²⁹⁾에 기재되어 있다.³⁰⁾ 그러므로 ICC의 출판물의 약어인 대문자의 ISBP보다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나타내는 소문자의 isbp가 그 범위에 있어서 훨씬 넓은 점에 실무상

25) UCP 600 제2조 : "Complying presentation means a presentation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26) 홍종덕, 『신용장과 UCP 600』, 도서출판 두남, 2007. 10, pp.20~21.

27) 당해 신용장에 의하여 수정·제외되고 있지 않는 UCP 600의 규정을 의미한다.

28) UCP 600에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라 하여 소문자로 표시하며 약어로는 isbp가 사용된다.

29)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同書는 고유의 서명이기 때문에 대문자인 ISBP로 표시된다.

30) 飯田勝人, 전제 주 13, p.17.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ICC 발간 ISBP 출판물이 국제 관행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지만, 이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표준은행관행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ICC 산하 은행위원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제시한 Official Opinion도 국제표준은행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³¹⁾

2) 매입

UCP 600은 제2조의 11번째로 매입(Negotiation)을 정의³²⁾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수년간 잘못 사용된 후 UCP 600에서 명확히 정의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용어는 일부 은행업자들 및 실무가들에 의하여 여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 즉,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이 용어는 결제(honour) 또는 제시 대신에 사용되고 있다.³³⁾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1997년 8월 29일 선고 96다43713 판결에서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매입의 개념을 정의하여 판시한 바 있다.³⁴⁾

국제상업회의소는 상환(Reimbursement)의 변제일 당일 또는 그 날 이전에 수익자에 대하여 자금을 선지급하는 것³⁵⁾에 의하여 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서

31)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제서, p.20.

32) UCP 600 제2조 :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33) Mohammad Burjaq, "UCP600 one year on", *DC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p.6.

34) 채동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른 법률관계 2”, 『금융』 통권 제 635호, 전국은행연합회, 2007. 2, p.50.

35) 예를 들어 매입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구매대금을 수익자에게 미리 지급하지 않은 상

선지급의 합의를 하는 것³⁶⁾에 의하여 환어음 및/또는 서류를 매입하는 것 (Purchase)이라는 개념으로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매입의 정의를 변경·간소화한 것이다.³⁷⁾

이 정의에 의하면 UCP 600 제7조 c항 또는 제8조 c항에 기초하여 각각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게 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자금을 선지급 필하거나, 또는 선지급 합의를 수익자와의 사이에서 이미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때에 자금을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합의는 매입이 아니다. 또한 개설은행은 매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³⁸⁾한다는 점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입의 한 형태인 선지급 하는 취지의 수익자와의 사이의 합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후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입은행이 이 합의가 행해진 취지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서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³⁹⁾

3) 지정은행

UCP 600 제2조는 12번째로 지정은행을 정의⁴⁰⁾하고 있는데,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가능한 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이용함으로써 신용장이 어느 은행에서 지급/인수/연지급/매입의 어느 방식에 의해서도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승인하

태에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송부하면서 서류동봉 표지에 "매입하였음"이라는 표시를 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매입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홍종덕, 전개서, p.27.).

36) 예를 들어 지정은행이 수익자와 신용장에서의 매입을 약정하면서 Back to Back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것들이 이러한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홍종덕, 전개서, p.27.).

37)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purchase"와 같은 매입의 권위 있는 서술은 "negotiation"이라는 용어를 둘러싸는 논쟁을 종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Pradeep Taneja, op. cit., p.4.).

38) 결제(Honour)란 지급신용장의 경우 일람출급 지급,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에 지급, 인수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제에는 매입의 의미가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개서, p.23.).

39) 飯田勝人, 전개 주 13, pp.17~18.

40) UCP 600 제2조 :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고 있다. UCP 600에서는 지정은행이라는 용어가 51번이나 반복됨으로써 동 용어의 중요성이 입증될 수 있다.⁴¹⁾

UCP 600의 기초 그룹은 상환의 조건을 적절히 규정하며, 상환은행이 임의의 은행의 상환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권되어 있다면 그 신용장이 어느 은행에서나 상기의 4가지의 방식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UCP 500 제10조 b항 i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가능한 신용장"이란 매입 형식으로 이용가능한 신용장⁴²⁾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수익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 등을 적용하는 지정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의도한 기초 그룹은 UCP 600에서 관련 정의 자체를 대폭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기와 같이 해석에서도 그 취지를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정은행이 인수/연지급 확약을 행하는 것은 바로 지정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한 여신을 행하는 것이며, 실무상은 지정은행은 여신범위의 유무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등의 신중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며, 수익자의 은행 선택에 즉시 대응 가능한 자세는 아니다. 또한 매입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정은행에 의한 확인이 붙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청구가능(With Recourse)으로 행해지지만, 지급/인수/연지급은 지정은행이 확인을 더한 확인신용장이 아닌 경우이더라도 상환청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환청구불능(Without Recourse)으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 그룹의 상기해석은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은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라는 신용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개설은행은 by negotiation이라는 문언을 부가하여, 그것을 매입형식의 신용장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⁴³⁾

2. 지정 관련 유의점

신설된 UCP 600 제12조 b항은 UCP 500 제10조 신용장의 제 유형 부분의

41) R. Sun, "The meanings of 'nominated bank' in UCP 600", *DCINSIGHT*, Vol.14, No.3, 2008. 7/9, p.10.

42) 동 조항에서는 freely negotiable credit으로 표현되어 있다.

43) 飯田勝人, 전계 주 13, p.18.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하여 지정은행의 면책 및 개설은행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은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의 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수권의 효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개정 내용이다.⁴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항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연지급 약속을 선지급하는 것 또는 매입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수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행의 인수필 환어음 또는 자행의 연지급 약속에 기초하는 지정은행의 지급채무가 독립적·절대적이고 무조건의 성질을 가지는 것임을 승인한 것이다.

동 조항에 대하여 많은 수출상 측의 은행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수입상 측의 은행들은 동 규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즉, 동 은행들은 그들의 고객인 개설의뢰인들이 가능한 사기에 대해 보호를 덜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 조항의 배제 또는 제외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제외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만일 사기가 신용장의 유효기한 만료 이전에 발견된다면 지정은행이 선지급한 또는 인수된 환어음을 매입한 또는 연지급 약속을 한 지정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⁴⁶⁾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어음 또는 동행이 행한 연지급 약속의 이행기는 어느 쪽도 그 지급기일이기 때문에 지정은행은 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지급기일 전에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지급기일 전의 지급의뢰 거절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상은 수익자 등의 제시인으로부터의 즉시 자금화의 요청에 따라 지정은행은 자행이 인수한 환어음의 금액 또는 자행이 부담한 연지급 약속 금액에서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함으로써 자금의 선지급을 하는 이른바 바할인이 세계적 규모에서 행해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정은행은 자행의 인수필 환어음 또는 연지급 약속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44) 박석재, 전제논문, p.77.

45) R. Dobáš, "Issues and question marks", *DCINSIGHT*, Vol.14, No.1, 2008. 1/3, p.3.

46) P. Andrie, "Excluding articles: a troublesome trend", *DCINSIGHT*, Vol.14, No.1, 2008. 1/3, p.5.

신용장에 할인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할인이 개설은행과의 관계에서 위법이 되지 않으며 허용되는 것이라고 믿고 할인을 행하기 때문에 UCP 600 제12조 b항은 이 당연한 실무관행을 UCP 600에서 새삼스럽게 명문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⁴⁷⁾

3. 서류의 송부 과정 중의 분실 관련 유의점

UCP 600 제35조의 두 번째 문단은 제시가 일치된 서류이며, 그 서류가 지정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확인은행 또는 확인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에게로의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경우이더라도, 개설은행·확인은행은 지정은행 그 밖의 당해 은행에 대하여 결제·매입·상환 의무를 져야 함을 명문화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다.

동 규정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는 서류가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간의 서류 송부 과정 중 분실되더라도 지급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은행의 책임규정을 새로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여타 은행면책 조항과 비교할 때 처음으로 은행의 귀책되는 경우를 면책조항 상에 단서로 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⁴⁸⁾ 다만 동 규정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당황해 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규정은 수년 동안 심지어 UCP 600의 시행 이전에도 신용장 관행에서 고유한 것이었다.⁴⁹⁾

즉, 동 규정은 ICC 은행위원회의 Opinion R.548⁵⁰⁾의 내용에 어느 정도 기초를 두고 있다. ICC 은행위원회는 R.548의 결론으로서 “신용장에서 상환의 지시가 신용장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의 지시에 따라 지급을 행한다.”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UCP 500의 제16조에 따라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의하여 매입되었지만 송부 과정

47) 飯田勝人, 전계 주 13, pp.18~19.

48)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11.

49) Anonymous, “The reasoning behind the UCP changes”, *DCINSIGHT*, Vol.14, No.1, 2008. 1/3, p.2.

50) ICC, *Unpublished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R.548, ICC Publication No.660, 2005, pp.91~93.

중에 분실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신용장에 기초하는 상환의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개설은행에 의한 서류의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은행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행해 지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UCP 600에 의하여 제35조의 두 번째 문단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신용장통일규칙의 규정상은 서류분실에 관한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면서도 ICC 은행위원회는 신용장의 실무지침인 Opinion에서 개설은행의 상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다.⁵¹⁾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수익자의 요청에 응하여 신용장에 기초한 결제·매입을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자는 일치하는 제시를 하였지만, 지정은행에게는 결제·매입을 요청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은행 및 수익자 양자의 이익은 서류가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경우이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지정되더라도 개설은행의 의뢰에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개설은행·확인은행은 일치한 제시로서의 서류인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서류 사본의 제공을 지정은행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말이 지정은행·확인은행에게 자행 앞으로 제시된 서류의 사본을 보유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설된 본 조항은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조항의 해석상 개설은행·확인은행은 일치한 제시로서의 서류인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서류 사본의 제공을 지정은행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개설된 신용장에는 본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를 명기한 것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본 조항이 초래하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개설은행의 명확한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²⁾ 만일 은행들이 이 규정의 제외를 기대한다면, 그들은 지정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시각에

51) 平野英則, "UCP600第35條第2・パラグラフへの實務對應(その1)", 『金融法務事情』, No.1834, 2008. 5. 5, pp.4~5.

52) 飯田勝人, 전계 주 13, pp.22~23.

서 그것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⁵³⁾

동 규정의 제외와 연결된 흥미 있는 문제는 무엇이 서류의 분실을 구성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서류들이 분실되었다고 보고되지 않고 단지 지연된 경우, 개설은행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⁵⁴⁾

서류분실 판명시의 실무대응은 이하와 같다.

첫째,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 사본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ICC의 주석서는 개설은행은 제시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은행에 대하여 서류 사본의 송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취지를 해설하고 있으며, UCP 600의 기초 그룹의 의장이었던 Gary Collyer씨도 동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대하여 서류 사본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둘째, 서류의 송부방법 및 송부수단 확인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이 신용장에 의하여 지정된 서류의 송부방법 및 송부수단을 준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⁵⁵⁾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확인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신용장조건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ICC의 주석서에 있는 것과 같이 UCP 600 제35조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취지를 주장하여야 한다.

셋째, 서류가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것의 확인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서류가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것의 확인자료⁵⁶⁾의 제출을 지정은행에게 청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서류가 송부 과정 중에 분실한 것이라면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하여 UCP 600 제35조의 적용이 없이 그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취지를 주장하여야 한다.

넷째, 제시기간 내 그리고 동시에 유효기한 내의 제시의 확인자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시가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서류가 제시기간 내 또한 유효기

53) G. Collyer, "Exclusions, interpretations and the future of the UCP", *DCINSIGHT*, Vol.14, No.2, 2008. 4/6, p.3.

54) N. Keller, "More on those troublesome exclusion clauses", *DCINSIGHT*, Vol.14, No.2, 2008. 4/6, p.6.

55) 예를 들면 송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사 수령서의 사본 등을 말한다.

56) 예를 들면 분실 시에 지정은행이 서류의 도착 여부를 조회한 때의 특사업자로부터의 회답서의 사본 등을 말한다.

한 내에 제시된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⁵⁷⁾의 송부를 지정 은행에게 청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⁵⁸⁾

I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UCP 600의 실무상의 유의점을 서류 심사 및 정의, 지정, 서류 송부 관련 내용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본론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필자의 주장을 덧붙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서류심사 관련해서 서류심사기간을 검토하였는바 은행영업일에 소매금융 업무만을 수행하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장 제5은행영업일은 항상 제5은행영업일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장 제5은행영업일 내의 상당한 기간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류상의 정보의 저축은 각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에서의 정보의 鏡像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의 기능 충족은 서류 제목보다는 서류의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서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동 서류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은행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은행들에게 불리한 조항에 관해서는 UCP 600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출상, 수입상 등 무역업자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제외시키고 은행들을 보호하는 조치는 중국에는 신용장의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은행들의 수익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57) 제시기간 내 또한 유효기한 내에 제시된 취지를 기재한 서류송부장(cover letter)의 사본 또는 지정은행의 증명서 등을 말한다.

58) 平野英則, “UCP600第35條第2・パラグラフへの實務對應(その2)”, 『金融法務事情』, No.1843, 2008. 8. 25, pp.6~7.

참 고 문 헌

-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강호경·임목삼, “UCP 600상 상당일치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박세운·김영락·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서정두, “UCP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채동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 따른 법률관계 2”, 『금융』 통권 제635호, 전국은행연합회, 2007. 2.
- 한재필, “UCP 600에서의 서류심사표준에 관한 연구 : UCP 500의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 홍종덕, 『신용장과 UCP 600』, 도서출판 두남, 2007. 10.
- 高砂謙二, “信用狀統一規則改正とノンコルレス銀行の第二通知銀行問題(上) - 中小金融機關實務對應策お裁判事例から検討 -”, 『國際金融』, 第1187號, 2008. 4. 1.
- 飯田勝人, “UCP600의14條における若干の解釋上の問題點”, 『銀行法務21』, No.689, 2008. 6.
- _____, “UCP600의ICC코멘타리에關聯した銀行實務上の注意點”, 『銀行法務21』, No.684, 2008. 2.
- _____, “動き出した信用狀統一規則の改訂作業と改訂の方向性”, 『金融法務事情』, No.1693, 2003. 12. 15.
- 平野英則, “UCP600第35條第2パラグラフへの實務對應(その2)”, 『金融法務事情』, No.1843, 2008. 8. 25.
- _____, “UCP600第35條第2パラグラフへの實務對應(その1)”, 『金融法務事

- 情』, No.1834, 2008. 5. 5.
- Andrie, P., "Excluding articles: a troublesome trend", *DCINSIGHT*, Vol.14, No.1, 2008. 1/3.
- Anonymous, "The reasoning behind the UCP changes", *DCINSIGHT*, Vol.14, No.1, 2008. 1/3
- _____, "Banking commission approves revised rules on documentary credits", <http://www.iccwbo.org/iccjcde/index.html>, 2006. 10. 25 Paris
- Burjaq, M., "UCP600 one year on", *DCINSIGHT*, Vol.15, No.1, ICC, 2009. 1/3.
- Collyer, G., "Exclusions, interpretations and the future of the UCP", *DCINSIGHT*, Vol.14, No.2, 2008. 4/6.
- Dobáš, R., "Issues and question marks", *DCINSIGHT*, Vol.14, No.1, 2008. 1/3.
- Keller, N., "More on those troublesome exclusion clauses", *DCINSIGHT*, Vol.14, No.2, 2008. 4/6.
- Sun, R., "The meanings of 'nominated bank' in UCP 600", *DCINSIGHT*, Vol.14, No.3, 2008. 7/9.
- Taneja, P., "UCP 600 :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NSIGHT*, Vol.12, No.4, 2006. 10/12.
-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680, 2007.
- _____,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2007.
- _____, *The first complete draft of UCP 600*, 2005. 11.
- _____, *Unpublished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R.548*, ICC Publication No.660, 2005.
- _____,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Lee, Bang Sik · Park, Suk Jae

The latest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00 has been adopted by most banks in the world since July 1, 2007.

This work intends to study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field of examining documents and defining some words.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field of examining documents include the period for examining documents, the conflict with data in the documents, and the fulfilling the function of documents.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the field of defining some words include the complying presentation, negotiation, and nominated banks.

Furthermore, this work studies some points for practical attention of UCP 600 in relation to the nomination and the missing in the course of sending documents.

Key Words : ICC, UCP 600, Examine Documents